

**①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500101】 기본A형), (【500301】 기본C형)
일상돌봄 가사 서비스 (【500801】 기본B형)**

구분	내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9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세~만39세)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 가족						
내용 및 구성	<p>•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p> <p>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정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p> <p>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청소</td> <td>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td> </tr> <tr> <td>세탁</td> <td>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td> </tr> <tr> <td>식사준비</td> <td>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td> </tr> </table> <p>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p> <p>※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p>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최대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p>•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p> <p>※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p> <p>•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p>• 제공인력 등록기준 10명 이상(단, 군지역은 3명 이상)</p> <p>가) (돌봄 서비스 기본 A형, C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p>나) (가사 서비스 기본 B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메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④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가격산정	• 시간당 단가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p>※ 야간휴일 및 고난도 사례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가산 적용 가능하며, 가산률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p> <p>• 서비스 유형별 단가(2025년 1월1일부터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재판정 받은 경우 적용) ※ 2025년 이전 이용자는 24년 가격적용</p>								
가격산정	서비스 유형	서비스가격 (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2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만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개인유구 파악 -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기본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소득수준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산출표

①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정부지원금 = 시간당 수가와 동일
- (기본서비스 A형, C형)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 (기본서비스 B형) 시간당 1만 8천원(일 최대 3시간 제공)

②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부담금 10%

유형	이용시간당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A형, C형	22,500	2,500	29,700	3,300	37,800	4,200	44,100	4,900	49,500	5,500
B형	16,200	1,800	24,300	2,700	32,400	3,600	40,500	4,500	48,600	5,400
유형	3.5시간		4시간		4.5시간		5시간		5.5시간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A형, C형	55,800	6,200	61,200	6,800	69,300	7,700	76,500	8,500	83,700	9,300
유형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
A형, C형	90,900	10,100	99,000	11,000	105,300	11,700	110,700	12,300	122,400	13,600

③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 본인부담금 25%

유형	이용시간당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A형, C형	18,750	6,250	24,750	8,250	31,500	10,500	36,750	12,250	41,250	13,750
B형	13,500	4,500	20,250	6,750	27,000	9,000	33,750	11,250	40,500	13,500
유형	3.5시간		4시간		4.5시간		5시간		5.5시간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A형, C형	46,500	15,500	51,000	17,000	57,750	19,250	63,750	21,250	69,750	23,250
유형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정부지원 (75%)	본인부담 (25%)
A형, C형	75,750	25,250	82,500	27,500	87,750	29,250	92,250	30,750	102,000	34,000

④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 본인부담금 100%

- 본인부담금 = 시간당 수가와 동일

② 【500401】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구분	내용							
시행 시군	•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9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세~만39세)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 필요 가족							
내용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등 배달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반식</th> <th>월 8회 (주1~2회)</th> </tr> </thead> <tbody> <tr> <td>-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td> <td></td> </tr> </tbody> </table>		일반식	월 8회 (주1~2회)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일반식	월 8회 (주1~2회)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경우 식단 구성 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등 참고(일부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공개 중) - 식사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관리형) 								
사건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 식약처의 영양지수(NQ),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	초기 1회						
식사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반식</th> <th>치료식</th> <th>저작 및 연하도움식</th> </tr> </thead> <tbody> <tr> <td>-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td> <td>-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td> <td>-회당 3식 이상, 1식 3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td> </tr> </tbody> </table>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3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	월 8회 (주1~2회)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3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						
영양관리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 ①유인물 제공, ②주기적 상담(문자, 메일, SNS, 전화, 대면 등), ③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 대면 방식(대면 상담, 집합교육)은 월 1회 이상, 비대면 방식(문자, 유인물, SNS 등)은 주 1~3회	필요시 수시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최대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지정·등록제) ①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②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 (영양관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26년에는 반드시 채용) - (그 외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가격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rowspan="2">서비스가격 (월)</th>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식사관리</td> <td rowspan="4">228,000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1,400원</td> <td>216,6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15%) 34,200원</td> <td>193,8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68,400원</td> <td>159,6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28,000원</td> <td>0원</td> </tr> <tr> <td rowspan="4">영양관리</td> <td rowspan="4">260,000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3,000원</td> <td>247,0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15%) 39,000원</td> <td>221,0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78,000원</td> <td>182,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60,000원</td> <td>0원</td> </tr> </tbody> </table>	유형	서비스가격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관리	228,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120~160%	(30%) 68,400원	159,600원	160% 초과	(100%) 228,000원	0원	영양관리	26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유형	서비스가격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관리	228,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120~160%	(30%) 68,400원	159,600원																																	
		160% 초과	(100%) 228,000원	0원																																	
영양관리	26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개인육구 파악 - 2단계 : 육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 영양관리형의 경우 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 영양관리형의 경우 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영양관리형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영양지수(NQ) '상'등급(75~100%)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건강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사전검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수집) - (식단) 식품군(곡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류 등) 및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 구성 - (조리) 가급적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리, 다양한 조리법 사용 - (위생) ① 소비기한(유통기한) 엄격 준수, ② 재료 보관 및 조리, 배달 과정에서 위생 철저히 점검 ③ 품질관리 및 위생사고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보존식 관리* *(보존식 관리 방법) ①모든 음식을 1인 분량씩(150g권장, 완제품은 그대로 보관) 전용용기나 멸균팩에 독립 보관, ②보관 시 보존식 기록표 작성하여 부착(채취자 성명, 채취일, 메뉴, 폐기일 등), ③-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보관(식생활안전관리원 보존식 보관방법 참고) - (배송) ① 배송 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안내, ②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치(보냉팩, 냉매 사용 등)

③ 【500501】 병원 동행 서비스

구분	내용																				
시행 시군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																				
사업목적	거동이 불편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9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세~만39세)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 가족																				
내용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door to door) -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① (이동 주의사항)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②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00~20:00, 주말 09: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③ (제공인력 매칭)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의무성X)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최대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가격증 소지자 																				
가격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7만원(인력 1인 기준) / 월 27.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1시간으로 산정(1.7만원) - 15분 이상 45분 미만 제공 시 30분으로 산정(8.5백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서비스가격(월)</th>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272,000원 (시간당 1.7만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3,600원</td> <td>258,4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15%) 40,800원</td> <td>231,2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81,600원</td> <td>190,4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72,000원</td> <td>0원</td> </tr> </tbody> </table> <p>※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단,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 → 전북자치도 미해당</p>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개인욕구 파악 -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4 【500601】 심리 지원 서비스

구분	내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사업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9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세~만39세)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신청자의 돌봄 필요 가족은 미해당)			
내용 및 구성	•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 중복이용 제한 :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행복이음 확인)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선택)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최대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외2'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마)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가격산정	•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240,000원	160%초과	(100%) 240,000원	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개인욕구 파악 -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PI-2(MMPI-2RF가능), BDI, STAI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5 【510113】 중장년건강생활지원 서비스

구분	내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사업목적	• 돌봄필요 중장년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신체능력 향상 도모			
신청자 서비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40세~만 64세 • 욕구기준 1.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중장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 돌봄 필요 증명 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 우선순위	1.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고립운동 포함)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2.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3. 1인 가구			
내용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건강상태 점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건강상태 점검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등)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노인 개인별 체력적 특성 및 질환에 따라 부위별(어깨, 허리, 무릎 등) 질환예방 운동 및 근력강화 운동, 낙상예방 운동 등 맞춤형 근골격 운동 프로그램 제공	연 3회	60분
부가 서비스	수퍼바이저에 의한 개인별 운동방법 및 효과 점검	연2회 상하반기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3회, 최대 2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체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바이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건강운동관리사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관련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체육학 전공 : 다음 3개 과목(기능해부학,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 운동처방) 이수한 자를 관련 전공자로 인정 			

가)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건강운동관리사 나)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③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체육학 전공 : 다음 3개 과목(기능해부학,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 운동처방) 이수한 자를 관련 전공자로 인정 다) 스포츠지도사(전문생활장애안노인스포츠지도사 포함)로 민간자격증(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취득자 ※ 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 '제공인력 양성과정'(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스포츠의학연구회 협업)을 통해 개발된 민간자격 라) 민간자격증(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취득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 '제공인력 양성과정'(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스포츠의학연구회 협업)을 통해 개발된 민간자격 ※ '24.6.30.이전 채용된 노인운동관련 제공인력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시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수준</th> <th colspan="2">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0,000원</td> <td>190,0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15%) 30,000원</td> <td>170,0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60,000원</td> <td>140,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00,000원</td> <td>0원</td> </tr> </tbody> </table>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관정 - 2단계 : 측정(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계획 수립 - 4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공통, 개인별) 실시 - 5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6단계 : 사후관리 (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기관방문형 보험가입)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SFT(Senior Fitness Test)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연3회) -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6~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6 【520113】 전북힐링지원 서비스

구분	내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치유자원 활용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심리적 건강성 증진, 문제 예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촉진 •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일상회복, 가족관계 증진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9세~만64세 이하(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전북청년농촌치유프로그램(자연스러운힐링스테이)(행복이음 확인) -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돌봄필요청·중장년) 만19세~만64세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만9세~만39세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③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신청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BMI가 23kg/m² 이상이거나 18.5kg/m² 미만인 경우</td> <td><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td> </tr> <tr> <td>-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td> <td>-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td> </tr> <tr> <td>-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td> <td>-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td> </tr> </tbody> </table>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1. (만9세~만39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만19세~만64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고립운동 포함)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2.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3. 한부모가구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족(연령 무관)}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족(연령 무관)} • 서비스 내용 : 월 4회										
내용 및 구성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건강 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요가,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 마음건강 프로그램 : 원예활동(땃밭가꾸기, 반려식물 심기,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 화환 만들기 등), 차(차 만들기, 다도), 동물(곤충) 매개치유, 공예(도예, 목공, 자연 모빌, 유리공예, 천연염색 등), 명상(죽욕, 풍욕 등), 사진활동 -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계절 농특산물 효능),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건강밥상 또는 다과), 푸드아트 테파리(건강음료, 쿠키, 샐러드, 밀반찬 등 제철음식 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 치유 피크닉 등 	월 4회	3시간							
부가서비스	활동 포트폴리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없음)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일치해야 함 가) 농촌진흥청 발급 치유농업사 1~2급 나) 치유농업 관련 서비스 국가(전문, 기술) 자격증* 소지자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자격 																							
	전문자격(국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물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실무경력 : 치유농업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학교 등에서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다) 농업인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교육(150시간 이상) 수료자라) 심리·상담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교육학(상담·심리), 체육학, 재활학, 영양학 등 관련 서비스 전공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치유농업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마) 해당 분야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가격산정	• 회당 서비스 기준																							
	회당 이용시간	회당 가격	월별 횟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th> </tr> <tr> <th>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2인) 이용</th> <th>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3인 이상) 이용</th> </tr> </thead> <tbody> <tr> <td>3시간</td> <td>50,000원</td> <td>4회</td> <td> 100,000원 (월 2회) * 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000원 * 3인 예시) 100,000원+30,000원=130,000원 (월 2회) </td> </tr> </tbody> </table>	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		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2인) 이용	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3인 이상) 이용	3시간	50,000원	4회	100,000원 (월 2회) * 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000원 * 3인 예시) 100,000원+30,000원=130,000원 (월 2회)												
	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																							
	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2인) 이용	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3인 이상) 이용																						
3시간	50,000원	4회	100,000원 (월 2회) * 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000원 * 3인 예시) 100,000원+30,000원=130,000원 (월 2회)																					
•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0,000원</td> <td>190,0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15%) 30,000원</td> <td>170,0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60,000원</td> <td>140,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00,000원</td> <td>0원</td> </tr> <tr> <td>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td> <td>면제</td> <td>200,000원</td> </tr> </tbody> </table>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면제	200,000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면제	200,00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과약, 사전검사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제공 4단계 : 사후검사, 피드백 제공 및 종결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관방문형 보험가입)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고립감, 우울척도(통합적한국판 CES-D),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Family Relations Scale-Brief Form)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6명~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7 【520213】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사업목적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의 자기돌봄 역량 강화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9세~만39세 이하(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욕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이용 제한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행복이음 확인) -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돌봄필요청·중장년) 만19세~만64세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이동인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만9세~만39세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③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서비스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되는 서류 가능)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9세~39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만19세~64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고립운동 포함)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이동인 경우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체지방률 여성 28%, 남성 20% 이상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월 1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체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②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③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3 월12회 (회당 70분) ② 1:4 월1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재판정 3회, 최대 2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경험이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참여 권장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나)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가격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바우처 총액 (월)</th> <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 </tr> <tr> <th>소득수준</th> <th>본인부담금</th> <th>정부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240,000원</td> <td>수급자, 차상위</td> <td>(5%) 12,000원</td> <td>228,000원</td> </tr> <tr> <td>120% 이하</td> <td>(15%) 36,000원</td> <td>204,000원</td> </tr> <tr> <td>120~160%</td> <td>(30%) 72,000원</td> <td>168,000원</td> </tr> <tr> <td>160% 초과</td> <td>(100%) 240,000원</td> <td>0원</td> </tr> <tr> <td></td> <td>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td> <td>면제</td> <td>240,000원</td> </tr> </tbody> </table>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면제	240,000원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면제	240,000원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과약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관방문형 보험가입)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바디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3% 향상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